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 -

개정이유

- 자치조직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현황을 조례로 정하고
-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인력보강지침에 따른 한시정원의 승인
-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인력보강지침에 따른 한시정원의 승인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함.

주요골자

- 정원의 증원(안 제2조)
 -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 5명(706명 → 711명)
 - 현행 : 706명(집행기관의 정원 : 69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 개정 : 711명(집행기관의 정원 : 696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현황을 제정하고 “별표”를 신설함.(안 제3조)

참고사항

- 비용 추계서
-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승인[자치행정과-9208(2005. 10. 6)]
- 복식부기 확산보급관련 전담인력 승인[자치행정과-9704(2005. 10. 18)]

□ 검토의견

-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선진형 재정제도의 도입으로 2008년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2007년 말까지 한시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하려는 내용과
 -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에도 2007년부터 발생 주위에 입각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담할 인력 3명을 보강하려는 내용으로
- 동 제도 도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써 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 착오를 사전에 최소화하려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른 한시적 인력 보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한시전담인력 보강 후 사업 종료시 초과인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2호
----------	-------

제출년월일 : 2005. 11. 21

제 출 자 : 예산군수

□ 제안이유

- 자치조직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현황을 조례로 정하고
-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인력보강지침에 따른 한시정원의 승인
-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인력 보강지침에 따른 한시정원의 승인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정원의 증원(안 제2조)
 -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 5명(706명 → 711명)
 - 〔 현행 : 706명(집행기관의 정원 : 69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 〔 개정 : 711명(집행기관의 정원 : 696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현황을 제정하고 “별표”를 신설함.(안 제3조)

□ 참고자료

- 비용 추계서
-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승인[자치행정과-9208(2005. 10. 6)]
- 복식부기 확산보급관련 전담인력 승인[자치행정과-9704(2005. 10. 18)]
- 지방자치단체 팀제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통보 (자치행정과-10278(2005. 11. 3))

예산군 조례 제262호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691명”을 “696명”으로 하며, “706명”을 “711명”으로 한다.

제3조 기관별로 두는 계급별 정원은 “별표1”로 하고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현황을 “별표2”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2명(행정 7급, 전산 8급)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며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3명(행정 6급, 행정·세무 7급, 전산 8급)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91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p> <p>총 계 : 706명</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1. ----- : <u>696명</u></p> <p>2. -----</p> <p>----- : <u>711명</u></p>	<p>제3조(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의 규정)</p> <p>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u>별표와</u> <u>같으며</u>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의 규정)</p> <p>-----</p> <p>-----<u>별표 1로</u> <u>하고</u>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현황은 <u>별표 2와</u> <u>같으며</u> -----</p>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11	290	15	121	59	226	
정 무 직	1	1					
일반직	계	542	242	7	63	29	201
	4급	3	2		1		
	5급	31	13	3	1	2	12
	6급	145	72	2	7	8	56
	7급	168	95	2	10	9	52
	8급	130	56		32	7	35
	9급	65	4		12	3	46
별정직	계	20	2		16	2	
	5급						
	6급	15			15		
	7급	5	2		1	2	
	8급						
지도직	계	34			34		
	지도관	4			4		
	지도사	30			30		
기능직	계	114	45	8	8	28	25
	6급	3	1		1		1
	7급	10	5	1	1	1	2
	8급	19	12	2		3	2
	9급	36	13	2	1	11	9
	10급	46	14	3	5	13	11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현행

구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계	706	285	15	121	59	226	
정무직	1	1					
일반직	계	537	237	7	63	29	201
	4급	3	2		1		
	5급	31	13	3	1	2	12
	6급	144	71	2	7	8	56
	7급	166	93	2	10	9	52
	8급	128	54		32	7	35
	9급	65	4		12	3	46
별정직	계	20	2		16	2	
	5급						
	6급	15			15		
	7급	5	2		1	2	
지도직	계	34			34		
	지도관	4			4		
	지도사	30			30		
기능직	계	114	45	8	8	28	25
	6급	3	1		1		1
	7급	10	5	1	1	1	2
	8급	19	12	2		3	2
	9급	36	13	2	1	11	9
	10급	46	14	3	5	13	11

개정안

구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계	711	290	15	121	59	226	
정무직	1	1					
일반직	계	542	242	7	63	29	201
	4급	3	2		1		
	5급	31	13	3	1	2	12
	6급	145	72	2	7	8	56
	7급	168	95	2	10	9	52
	8급	130	56		32	7	35
	9급	65	4		12	3	46
별정직	계	20	2		16	2	
	5급						
	6급	15			15		
	7급	5	2		1	2	
지도직	계	34			34		
	지도관	4			4		
	지도사	30			30		
기능직	계	114	45	8	8	28	25
	6급	3	1		1		1
	7급	10	5	1	1	1	2
	8급	19	12	2		3	2
	9급	36	13	2	1	11	9
	10급	46	14	3	5	13	11

【별표 2】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9	9				
정 무 직						
일반직	계	9	9			
	4급					
	5급					
	6급	2	2			
	7급	4	4			
	8급	3	4			
	9급					
별정직	계					
	5급					
	6급					
	7급					
	8급					
지도직	계					
	지도관					
	지도사					
기능직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별표 2】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현 행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4	4				
정 무 직						
일반직	계	4	4			
	4급					
	5급					
	6급	1	1			
	7급	2	2			
	8급	1	1			
별정직	계					
	5급					
	6급					
	7급					
지도직	계					
	지도관 지도사					
기능직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개정안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9	9				
정 무 직						
일반직	계	9	9			
	4급					
	5급					
	6급	2	2			
	7급	4	4			
	8급	3	3			
별정직	계					
	5급					
	6급					
	7급					
지도직	계					
	지도관 지도사					
기능직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역

-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 운영
-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 정원 5명 증원(6급 1, 7급 2, 8급 2)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총 계	153,753	
○ 인건비	137,841	
- 기본급	83,286	- 봉급 : 5,949,000원×12월=71,388,000 · 6급 : 1,351,200원×1명=1,351,200 · 7급 : 1,212,400원×2명=2,424,800 · 8급 : 1,086,500원×2명=2,173,000
- 수 당	10,800	- 상여금 : 71,388,000원×1/6=11,898,000
- 정액급식비	7,800	- 가족수당의 2중 : 180,000원×5명×12월=10,800,000
- 교통보조비	7,200	- 130,000원×5명×12월=7,800,000
- 명절휴가비	8,924	- 120,000원×5명×12월=7,200,000
- 가계지원비	14,873	- 71,388,000원×1.5/12=8,923,500
- 연가보상비	4,958	- 71,388,000원×2.5/12=14,872,500
○ 물건비	1,150	- 71,388,000원×20/288=4,957,50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0	- 200,000원×5명=1,000,00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0	- 30,000원×5명=150,000
○ 이전경비	14,762	
- 성과상여금	3,934	- 1,258,870원×5명×62.5%=3,933,960
- 연금부담금	7,080	- 83,286,000원×8.5%=7,079,310
- 국민건강보험금	3,748	- 83,286,000원×4.5%=3,747,870